

■ 제목 : 교체하는 소화기 화재진압 실습용으로 활용

■ 개요

-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의 소화기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관리기관이 소화기를 교체하면서 화재진화 실습을 신청하면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초기 화재진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처분하는 소화기로 임직원 또는 입주민들이 화재진화 실습을 실시하도록 지원함(소방청에는 기재안함)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소방서에서는 노후 소화기 폐기와 교체에 대한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.

- 노후 소화기 폐기(교체) 방법으로는 관할소방서 소화기 수거, 정비 지원 센터를 통한 폐기(교체)할 수 있다.

- 노후 소화기는 유사시 성능을 발휘 못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용시 압력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능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폐기하는 것이 낫다.

- 소화기 사고 사례

소화기 사고사례

- 1979. 7. 11. 부산시 동래구 소재 공장(사망 1)
- 1988. 5. 24. 서울시 성동구 소재 고물상(사망 1)
- 2001. 3. 28. 경북 울주군 소재 화학공장(사망 1)
- 2011. 6. 03. 충북 청원군 소재 고물상(사망 1, 부상 1)
- 2013. 8. 22.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압공장(사망 1)



■ 개선사항

-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고 교체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중 노후 소화기를 화재진화 실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소방서에 신청서 제출
 - 현재 소화기 비치 현황 및 교체 예정(일) 현황
 - 참가인원 및 실습장소, 화재 진화 실습 희망일 등 작성
- 소방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습 날짜와 시간을 통보
 - 화재, 재난안전구조 등 긴급 상황 시 방문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
 -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(안전준비사항)
 - ※ 안전준비사항 : 실습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 이동, 가연물질 제거 등
 - 폐기 예정 소화기 중 사용가능한 것 선별작업 요청(녹색이 표시된 소화기)
 - 화재 진화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(드럼통과 뿔감나무 등) 안내
- 공공기관, 공동주택, 도서관, 보건소, 복지회관, 교회, 학교 등에 '교체 소화기 화재 진화 실습 활용' 안내문을 발송하여 모든 주민들이 소화기를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주민이 되도록 함
- 화재진화 실습(필요 시 지정기관에 소화기 성능검사 후 실시)
 - 폐기할 소화기 중 선별된 실습에 사용할 소화기를 소방관이 안전유무 확인
 - 실습 전 초기 화재 진화 교육, 소화기 정상상태 및 사용방법 교육실시
 - 소방관 입회하에 드럼통에 뿔감나무를 넣고 불을 붙임
 - 입주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화 실시
 - 폐 소화기는 현장에서 소방관이 수거
 - ※ 소방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소화기, 미분무 소화기, 연기소화기, 시뮬레이션 소화기 등을 준비하여 교육도구로 활용함

■ 기대효과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화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폐기하는 것 보다 화재진화 실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안전의식 고취와 화재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함